

2023년

최저임금 시간급

9,620원

월 환산액 2,010,580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※ 2023.1.1. ~ 2023.12.31. 적용

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-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,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?

-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「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」을 제외하고, 일·주·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

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 : 209시간(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)

$$\text{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} = \text{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} - \text{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}$$
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사용자는 「① 최저임금액,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,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,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」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,276,250원을 받는 경우

월급명세서	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	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기본급 1,575,000원	기본급 1,575,000원	9,596원(2,005,616원 ÷ 209시간)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
직무수당 150,000원	직무수당 150,000원	
교통비 150,000원	식대·교통비 249,895원*	
식대 120,000원	상여금 30,721원**	
시간외수당 150,000원	계 2,005,616원	
상여금 131,250원		
계 2,276,250원		

※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(1,575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)

* 식대, 교통비 270,00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,010,580원의 1%(20,105원)을 초과한 금액

** 상여금 131,25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,010,580원의 5%(100,529원)를 초과한 금액

